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2. 5 선고 2017가단960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관리단

소송대리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주,이의결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1. 8

판결 선고 2020. 2. 5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2,446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5. 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A빌딩을 관리하는 관리단이고, 피고는 2007. 8.경 부터 2016. 12.경까지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.

나. 피고는 '원고의 대표자였던 E과 공모하여 A빌딩 입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를 보관하던 중 2010. 1. 5.경부터 2016. 5. 10.까지 경리업무수당,방화관리비,선급금,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6,500,6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소비하였다'는 공소사실로 기소(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526)되었으나 2018. 11. 14. 피고에게 불법영득의사 나 피고가 불법 영득한 금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 고되었고,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. 11. 28. 항소 기각 판결(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586)이 선고되었으며, 위 판결은 2019. 12. 6. 확정(이하 관련 '형사사건끼라 한다)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호증,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### 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52,446,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 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2,446,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판단

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52,446,600원 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피고가 관 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송종선